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February 05, 2024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호주: 무형자산 계약에 관한 실무 규정 준수 지침 확정

2024년 1월 17일,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은 무형자산 계약과 관련하여 실무 규정 준수 지침(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이하 "PCG") 2024/1 (이하, "PCG 2024/1" 혹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3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두 차례 발표된 초안의 최종본이며, 마지막 초안은 지난 2023년 5월에 발표되었습니다.

1. 개요

PCG 2024/1은 무형자산 계약 구조(Structure)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호주의 이전가격 세제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 및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s, "GAAR")'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ATO는 가이드라인이 무형자산 거래의 가격적 측면을 중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나, 적용된 이전가격 방법론 및 이익률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위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내재된 사용료(embedded royalties) 및 사용료 관련 원천징수 세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은 세가지의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Part 1:** 무형자산의 이전 계약과 관련한 ATO의 규정 준수 방식을 설명합니다.
- **Part 2:** 무형자산 이전 계약과 관련한 ATO의 위험 평가 체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납세자들이 자체적으로 위험 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용해야 하는 포인트 시스템 기반의 두 가지의 위험 평가 프레임워크(Risk Assessment Framework, "RAF")가 포함됩니다.
- **Part 3:** 무형자산 이전 계약과 관련한 ATO의 증빙 요건들을 설명합니다.

추가적으로 부록 1에서는 15가지의 RAF 적용례를(무형자산의 중앙화, 무형자산의 이분화, 상업화 전 무형자산의 이전 및 R&D 계약 등)제시하고 있으며, 부록 2는 무형자산 거래 관련 증빙 요건을 제시합니다.

무형자산의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계약은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며, 이와 같은 계약은 호주에서의 무형자산 개발(Development), 강화(Enhancement), 유지(Maintenance), 보호(Protection) 및 활용(Exploitation) 등을 포함됩니다. 무형자산의 정의는 2022년 OECD 이전 가격 지침서(2022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최종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무형자산의 예시(예: 정책, 매뉴얼, 기준 및 프로토콜)는 무형자산의 정의가 넓게 해석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가이드라인에 세 가지의 "제외되는 무형자산 이전 계약(Excluded Intangibles Migration Arrangements)"이 제외되었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국외 소재 판매업자에게 무형자산을 허여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국외에서의 무형자산 배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무형자산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그룹내 저부가가치 용역(PCG 2017.2 및 OECD 이전가격 지침서에 정의된 것)의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

또 다른 중요 변경 사항으로 무형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금전대차 및 판매거래의 위험을 구별하기 위한 Colored Zone System의 도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위험 등급으로 분류를 하던 기존 초안과는 달리 이번 최종 가이드라인은 등급을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였으며, RAF를 적용해 산정한 위험 포인트를 합산하여 등급을 산출합니다.

Risk Zone	Risk Rating	Risk Points
Green	저위험	20점 이하

Blue	저위험에서 중위험	20 ~ 24점
Amber	중위험	25 ~ 35점
Red	고위험	35점 이상
White	추가적인 위험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음	N/A

ATO의 Colored Zone System 접근방식 관련 수정사항은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Green 등급'에 대한 더 높은 확실성 부여:** Green 등급에 대하여 ATO는 납세자의 자체적인 위험 평가 확인 외에 거래의 구조적 측면에서 조사를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가격 측면에서의 조사는 수행될 수 있습니다.
- **'White 등급'의 신설:** 무형자산의 이전 거래와 관련하여 과거 납세자가 ATO와 합의하였거나, 호주 법원의 판결 또는 ATO로부터 'Low-risk' 등급 또는 'High-assurance' 등급을 받은 이후 거래에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 대해 White 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RAF 테이블의 Part2와 관련하여 설명을 동반한 변경사항이 있었으며, 최종 가이드라인에서는 최종 RAF 위험 포인트가 조정되었습니다. RAF 테이블 관련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RAF 테이블 2의 변경사항:** RAF 테이블 2는 호주 소재 납세자가 무형자산의 소유자일 경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RAF 테이블 1의 질문 3번의 선지 추가(카테고리 3):** 무형자산의 이전 거래가 소유권의 이전을 동반하지 않는 거래(즉, 국외특수관계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이전 받으면서 납세자가 그 사업과 관련한 잔여이익을 과세 소득으로 포함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새롭게 추가된 RAF 테이블 2의 질문 3번은 납세자가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잔여이익을 배분 받는 경우 위험 점수가 낮아집니다.
- **RAF 테이블 1 및 2의 국외특수관계자 처리 방법 변경:** 두 RAF 테이블 모두에서 무형자산을 전부 혹은 과점적으로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국외특수관계자를 각 테이블의 질문 3번에서 경제적 실질이 없는 국외특수관계자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RAF 테이블 1의 질문 6의 변경사항:** 무형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과세 소득의 감소가 예상될 시 모든 선급금(수익 또는 자본 계정 무관)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RAF 테이블 1의 질문 7의 추가:** "문서화되지 않거나 인식되지 않은 거래"라는 제목으로 질문이 추가되었으며, 해당 질문은 국외특수관계자가 호주 납세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혜택을 받지만, 해당 무형자산과 관련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형자산과 관련한 절차/활동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서 호주 납세자가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 위험 포인트를 높입니다.

RAF 테이블의 각 요소를 평가하는 데에는 본질적으로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ATO 또한 개정 내역 요약에서 이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조령")을 비롯해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2월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과 관련된 국조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조령 개정안 개정내용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혹은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5.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의 요건 신설은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 **국부펀드의 정의 규정:** 국부펀드가 소유하는 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하면서 관련 정 부기업(국부펀드) 정의를 시행령에 위임
- 2)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 본점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고정사업 장 손실을 포함하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구체화
- 3)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 방법:**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 과 시 해당사업연도에는 최저한세율 15%로 세액 계산하며 15%를 초과하는 세액은 후 속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정대상조세에 차감
- 4)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납부시 추가세액 면제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로서 추가세액 이 면제되는 경우 적격추가세를 제외한 추가세액 < 0 및 적격추가세제도가 시행령이 정한 회계기준 등 요건을 충족할 것
- 5)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의 요건 신설:** 소득산입보완규칙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규칙
- 6)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방식 구체화:**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 취득·처분 시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할 때 조직재편 특례에 따라 장부가액 사용(과세이연) 원칙
- 7)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 요건 규정:**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하여 공정가치 과세 등 투시과세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투시과세처리방식의 적용요건)

및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과세가 예상되는 등 과세분배방식 적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과세분배방식의 적용요건)

- 8)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요건 규정: 신고의 무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전환기* 동안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과태료 면제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06.30. 이전

2) 국조령 개정안 세부 내용

국조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정사항	개정안
1)	국부펀드의 정의 규정 (국조령 §100 ② 신설)	<input type="checkbox"/> 정부기업 중 국부펀드의 정의 - 국가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펀드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
2)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 (국조령 §107 의2 신설)	<input type="checkbox"/> 고정사업장 손실을 본점에 배분하는 경우 -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과세 소득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되는 방식으로 본점의 과세소득 및 조정대상조세 계산에 사용된 경우
3)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 방법 (국조령 §116 의2 신설)	<input type="checkbox"/> 이전 사업연도에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후속사업연도 배분 방법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 - 차감 후 잔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
4)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납부시 추가세액 면제요건 (국조령 §118 의2 신설)	<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이 면제되는 적격 소재국추가세의 요건 ❶ (회계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구성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 -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기준이나 공인된 현지 회계기준 등을 사용할 것 ❷ (일관성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추가세액이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과 일치하거나 많을 것

		<p>③ (운영요건) ①·② 요건 등의 충족여부 평가 시 OECD 동료평가 (Peer Review)의 기준을 충족할 것</p>
5)	<p>적격소득산입 보완규칙의 요 건 신설 (국조령 §125 ④ 신설)</p>	<p><input type="checkbox"/>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득산입규칙</p> <p>① 글로벌최저한세 규칙(OECD합의)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p> <p>②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을 제공 하지 않을 것</p>
6)	<p>조직재편에 따 른 특례적용 방 식 구체화 (국조령 §129 ④ 신설)</p>	<p><input type="checkbox"/> 장부가액의 공정가액 조정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의 계산 방법</p> <p>- (조정 사업연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다음 ①,② 중 하나의 방법으로 조정</p> <p>- ① 차액의 전부를 조정시점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반영</p> <p>- ② 차액을 5로 나누어 조정시점 및 이후 4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반영</p> <p>- (조정이후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시 공정가액을 사용</p>
7)	<p>투자구성기업 의 특례적용 요건 규정 (국조령 §136 ④ 신설, 국조 령 §137① 신 설)</p>	<p><input type="checkbox"/> 투시과세처리방식 요건 구체화: ① 또는 ②를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p> <p>① 주주구성기업이 소유하는 투자구성기업 소유 지분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p> <p>②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보험업법」 제2조의 상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의 이익</p> <p><input type="checkbox"/> 과세분배방식 적용요건 구체화</p> <p>- 분배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해당 투자구성 기업 및 주주구성기업의 세액이 해당 분배 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p>
8)	<p>전환기 글로벌 최저한세정보 신고서 제출오 류에 대한 과태 료 부과면제 요 건 규정</p>	<p><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과태료 면제 요건(①~⑤ 중 하나 충족)</p> <p>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 당국에 완전히 공개</p> <p>② 신고구성기업이 신고서 작성에서의 오인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p>

	<p>(국조령 5144 ⑦ 신설)</p>	<p>㉓ 신고서 작성 시의 오류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p> <p>㉔ 관련 법령의 해석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p> <p>㉕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 납부 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p>
--	----------------------------	--

03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3 중 7780 (2023.12.12)

제목: 쟁점업무는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의 공통 업무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쟁점업무 중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중을 객관적·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양 법인들의 매출액 비중이나 해당 용역의 특성·기능 등 다른 조건까지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안분·계산한 부분만을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게 공급한 용역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금액 중 현지법인의 기여 분으로 안분·계산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는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반면, 2020.1.1. 이후 사업연도의 경우 쟁점간주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쟁점금액 중 현지법인의 기여 분으로 안분·계산된 금액을 용역의 원가로 보아 그 금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국내 유명브랜드사로부터 의뢰받은 아웃도어 의류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로, 100% 출자한 ○○○소재 특수관계법인 2곳의 현지공장(이하 "현지법인")의 임가공 작업을 거쳐 납품하고 있는데, 소속근로자들을 현지법인에 파견·근무(이하 "파견인력" 및 "쟁점업무")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 ○○○원(이하 "쟁점금액")을 손금에 계상하여 법인세신고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파견인력을 이용하여) 현지법인에게 경영관리 등 용역을 공급(국제거래)하였는데도 그에 대한 신고는 없었다며, 쟁점금액(원가)에 5%를 가산한 ○○○ 원을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임시유보)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제기함

2) 쟁점

- ① 쟁점업무의 수행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공급한 (국제) 용역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이 용역의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p>1. 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체결한 의류 임가공계약에 따라 임가공작업을 수행할 뿐이어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임가공물품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수행할 그 밖의 업무 등은 직접 수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파견인력을 통해 자신 스스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현지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님</p> <p>2. 설령, 쟁점업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쟁점업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이 정한 “저부가가치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데도, 원가(쟁점금액)에 5%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한 것은 위법하며, 쟁점간주규정을 적용하더라도, 2020.1.1. 이후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가능하므로, 최소한 그 이전 사업연도 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p>	<p>1. 파견인력은 현지법인의 법인장·공장장 등의 직위로 현지법인의 사업영위에 반드시 필요한 현지법인의 업무(경영관리, 생산관리, 기술지원 등)를 수행하였는바, 그들이 청구법인과 관련되는 업무만을 한정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쟁점업무는 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한 업무수행으로 결국, 청구법인은 자신의 인력을 이용하여 현지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p> <p>2. 쟁점업무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에 적정이율을 가산함은 당연한데, 처분청은 쟁점간주규정 등에 따라 최소한의 통상이윤만을 가산함</p>

4) **판단**

- **[쟁점 1]** 처분청은 쟁점업무의 전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공급한 국제용역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국내 유명브랜드인 고객들로부터 의뢰받은 아웃도어 의류제품을 자신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의 임가공작업을 거쳐 납품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자신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지법인을 관리·감독할 직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파견인력이 실제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조사결과에서도, 파견인력은 현지법인의 법인장·공장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아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청구법인의 특허를 이용한 현지법인의 봉제기술 지도, 원단의 부두하역, 물류수송, 원부자재 창고 입출고, 현지공장장과의 협업, 제품의 창고 입출고, 제품검수, 국내 반입업무 등도 함께 수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파견인력이 현지에서 수행한 쟁점업무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오로지 현지법인의 독립적인 고유 업무로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업무는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의 공통 업무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쟁점업무 중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중을 객관적·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양 법인들의 매출액 비중이나 해당 용역의 특성·기능 등 다른 조건까지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안분·계산한 부분만을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게 공급한 용역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 2]** 처분청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계없이 쟁점간주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우선, 쟁점간주규정이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됨이 관련 부칙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2017 ~ 2019사업연도는 쟁점간주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규정 외에 이 사건 용역의 정상가격으로 5% 이윤이 가산되어야 함을 달리 입증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자신에 소속된 쟁점인력의 인건비(전부)를 부담한 것이 조세포탈을 하려는 의도였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현지법인의 기여 분으로 안분·계산된 금액(쟁점①의 결과)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는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반면, 이 사건 2020·2021사업연도의 경우, 쟁점간주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쟁점업무가 현지법인의 핵심적인 고부가가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함이 직접적·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관리업무로서 저부가가치 용역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만약 고부가가치 용역으로 보게 되면, 저부가가치 용역에 적용되는 쟁점간주규정의 이윤 5% 보다 더 높은 이윤이 가산됨이 논리적인데, 그 경우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된다)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현지법인의 기여 분으로 안분·계산된 금액(쟁점①의 결과)을 용역의 원가로 보아 그 금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04

관세

1. 납세자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납세자가 과세정보를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 법인 등 제 3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관세청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습니다.

납세자의 수입 납세정보 활용 편의성 제고, 무역 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활성화가 기대되며 2024 년 7 월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설) 관세법 제 116 의 6 조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근거 마련
 - (요구주체) 과세정보 당사자
 - (제공주체) 관세청
 - (제공정보) 「관세법」, 「FTA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
 - (제공대상) 본인 또는 제 3 자*
 -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세무대리 가능 회계사·변호사 등
 - (제공대행)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대행기관에서 대행 가능
 - (의무사항) 과세정보 유출 방지, 비밀유지,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 (제재수단)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 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

반도체산업을 지원하는 취지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수입된 후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주는 재수출면세제도 적용품목에 1) 반도체제조설비용 운반키트, 2) 반도체제조설비용 모니터링기기가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재수출예정인 반도체제조설비용 운반키트, 모니터링기기는 향후 수입신고 시 관세가 면제됩니다.



3. 트럼프 "당선 시 중국에 60% 이상 관세 부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중국산 물품에 60% 이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는 재임 중 중국산 물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는 경우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제재와 그에 따른 무역분쟁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중국 외 다른 국가들도 대미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a social media post from Naver News. The main headline is '트럼프 "중국에 60% 관세?...아마 그 이상 될 것"' (Trump "60% tariff on China?...probably more than that"). The text below discusses Trump's protectionist trade policy and his previous actions as president. There are two smaller news snippets below: one about '트럼프 "재집권시 중국에 60% 관세? 그 이상일 수도"' (Trump "60% tariff on China? It could be more than that") and another about '트럼프, "한국에 더 센 규제할 것"...사상 최대 "무역흑자" 꼬투리 ...' (Trump, "I will impose stronger regulations on Korea"...using the record "trade surplus" as a pretext...). The post includes a photo of Donald Trump and a cartoon illustration of him.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